

비상경제본부 회의 겸
경제관계장관회의 겸
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
26-24-2 (공개)

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

2026. 7. 31.

관 계 부 처 합 동

[요약]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

1 추진배경

- 그동안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안전기준 미흡, 안전투자 부진 등 **구조적 문제**가 **누적**되고 인명피해를 포함한 **공장 화재사고 지속**
- 공장화재 등 산업재해는 개별기업의 생산·매출손실*에 국한되지 않고, **공급망·고용** 등 **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 초래****

* 산업재해를 1% 증가 시, 매출액 성장률 0.45~0.71% 하락(산업안전보건연구, '19년)

** 예) 안전공업 화재에 따른 부품 수급 곤란으로 완성차 업계 생산 차질 발생

➔ **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여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장환경을 조성하고, 제조 생태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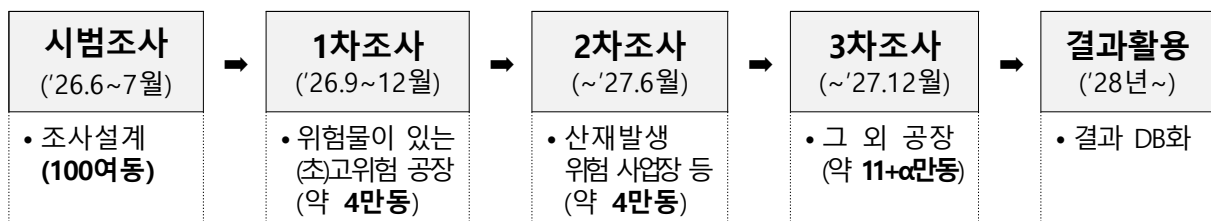
2 주요과제

1. 공장·창고 대규모 화재안전 실태조사 실시

◆ 화재 위험 우려가 있는 **총 19만동+α 공장·창고**를 대상으로 화재 취약성 및 위법 현황 전반에 대해 **법정부 실태조사** 실시

- 전국 **총 19만동+α 공장·창고*** 대상으로 **3단계 본조사** 실시
(시범조사(6.17~7.22) 결과를 토대로 8월 중 본조사 대상·방식 등 확정)

* 연면적 500㎡ 이상 공장·창고 + 위험물보관소, 산재발생 위험 사업장은 500㎡ 미만도 포함



※ 점검대상 중 국가보안시설(방산기업 등)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진행
+ 석유화학 등 폭발·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은 집중조사 실시

- 건축·소방·안전 등 **화재 취약성 및 위법 현황 전반**에 대해 조사
→ **위반사항은 즉시 개선** 조치하고 실태조사는 **DB화**해 관리

2. 화재 안전기준 일제 정비

◆ 건축·소방·위험물 등 **화재 안전기준**을 **선진국 수준**으로 대폭 강화

- ① (내화규제) 위험물 시설 대상으로 **불연 외장재*** 의무화(~'26.12), 공장 **내화구조**** 및 **준불연 외장재***** 적용 확대(~'27년) 검토

* (現) 준불연 외장재 사용 → (改) 불연 외장재 사용 의무화

** (現) 열음·생수·금속업종(63개) 등 제외 → (改) 모든 업종에 내화구조 적용

*** (現) 6층(22m) 이상만 적용 → (改) 3층(9m) 이상으로 확대

- ② (소방시설) 오작동이 적은 **지능형 화재감지기*** 설치 의무화(~'26.12), **스프링클러** 설치 대상 확대**(~'26.12)

* 연기 또는 온도 변화, 설치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 화재 여부를 정밀하게 판단

** (現) 4층 이상이면서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,000㎡ 이상인 층 →
(改) 연면적 5,000㎡ 이상인 공장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

- ③ (위험물 등) 금속분진·가공유 취급작업에 대한 관리 의무 부여 검토(~'26.12), **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*** 도입(~'28년)

* 기술역량·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전문 점검업자가 위험물시설 점검 수행

3.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

◆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춰 **안전투자**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·금융·세제 등 **인센티브**를 **획기적**으로 **강화**

(1) [재정] 안전투자 촉진 화재제로 보조·대출 패키지 신설 등

- ① (안전투자) 중소·중견기업 대상 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화재제로 **재정지원**(보조)·**대출 패키지** 프로그램 **신설**

- ① 화재·폭발 취약 사업장에 ①화재·폭발 예방장비·품목 구매*, ②소방시설 설치·교체**를 지원하는 **보조사업**('27~'31년, 0.2조원) **신설**

* AI 화재감지기,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, 스마트 피난유도설비, 소화기 등

** 스프링클러 설치, 비상구 설치·개선, 난연성 재질 벽체(패널) 교체 등

- 기존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지원사업 대비, **화재·폭발에 특화**해 지원대상(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)·**한도**(1억원) 대폭 **상향**

② 중소·중견기업 화재 안전투자 지원을 위해 5년간('27~'31년) 총 1.25조원 규모 가칭 **화재제로·안전투자 대출 프로그램** 신설

* (중소) 대출한도·지원횟수 등을 우대하는 융자 프로그램('27~'31년 총 2,500억원) 신설
(중견) 시중은행 대출('27~'31년, 1조원)에 이차보전(2.0%p, 기업별 최대 20억원) 지원

② (안전장비)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초기 화재 억제에 효과적인 **자동확산소화기*** 단계적 보급 사업 추진('27~'31년, 약 2만개소)

* 화재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고정 설치돼 화재를 자동 감지하고 소화약제 자동 분사

③ (R&D) **AI 기반 위험 조기경보** 등 화재예방 R&D 지원

[2] [금융] 안전투자 정책금융 3조원 신속 공급, 보험료 할인 등

① (정책금융) 3조원 규모 정책금융*을 신속 공급하고, 안전 인프라 투자보증** (기보, '26년 0.2조원) 지원대상에 화재취약기업 추가

* 산은 1.5조원, 기은 1.0조원, 신보 0.5조원 → 안전투자 금리·보증 우대 등 지원

** 보증비율 상향(85→90%), 보증료율 0.2%p 감면 등 우대지원

② (보험) 화재 안전장치 구비 공장 등에 **화재보험 할인**을 제공하고, **보험계약체결 이후**에도 소화설비 **할인금액 환급*** 추진

* (現) 보험 계약 체결 前 소화장비를 구비한 경우에만 할인 적용 →

(改) 계약체결 이후 소화장비를 구비하더라도 무사고로 계약 종료시 환급 실시

[3] [세제] 기업 화재예방 설비투자 촉진 세제 3종세트 추진

① (세액공제) AI, 로봇 등을 활용한 **첨단 안전기술** 등을 **신성장·원천기술**로 지정하여 관련 시설투자 등 세제지원 확대

* 투자세액공제율(%) [일반] (대기업)1 (중견기업)5 (중소기업)10
[신성장·원천기술] 3 6 12

② (가속상각) 中企 **안전설비 투자 가속상각**(기준 내용연수 50% 단축) 도입

③ (상생협력) 대기업 등이 **상생협력기금** 출연을 통해 협력업체의 화재예방 설비개선 투자지원 시 **법인세 10% 공제**

[4] (조달) 공공조달 가점·패널티를 통한 기업의 안전투자 유도

- 화재예방 등 안전투자 우수기업* 등을 대상으로 공공입찰 **신인도 가점**을 부여하고, 중대재해 발생기업에는 **패널티**** 부여

* 안전보건경영시스템(ISO-45001, KOSHA-MS) 인증기업, 재해경감 우수기업(추가 검토) 등

** 물품·용역 적격심사 및 우수제품 지정심사 시, 감점 및 지정 연장 배제(26.3월~)

4. 안전관리 강화

◆ **단속·처벌** 등 안전점검 강화, 위반행위에 대한 **신고포상제** 활성화

- ① (안전점검) **사후검사제도** 도입, **실태조사** 의무화 등 단속·조사 강화, **이행강제금** 강화 및 처벌대상 확대('26.下) 등 안전점검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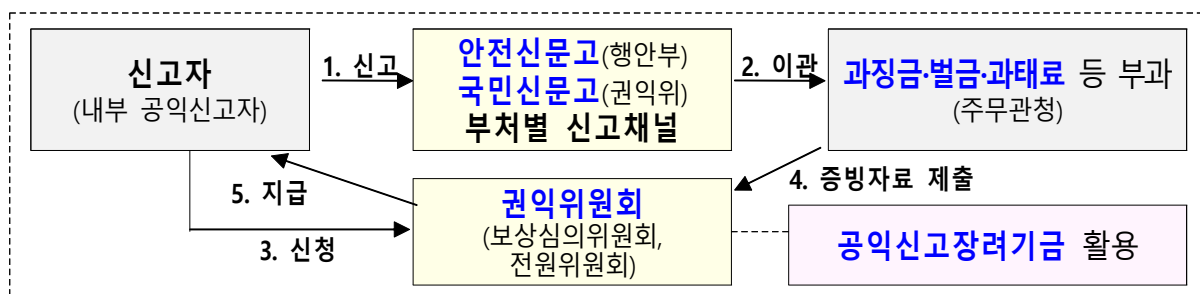
- **사후검사제도 도입** 지방정부 : 사용승인 이후 일정기간 경과 시, 허가권자가 위반여부 재확인
- **실태조사 의무화** 지방정부 : 現 재량규정 → 改 연 1회 이상 의무화 + 수시조사
- **이행강제금 강화** 지방정부 : (現) 재량에 따라 반복부과 + 가중부과 하한 無 이행강제금의 최대 100% 이내
→ (改) 반복부과 의무화 + 가중부과 하한 설정(50~100% 이내)
- **벌칙** 중앙정부 : (現) 불법건축물 건축주 등 처벌 → (改) 설계·시공한 자까지 처벌(未등록업체포함)

- ② (신고포상제) 공장화재 관련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해 사각지대 감시 강화 및 위반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제·예방기능 강화

- 1차 본조사('26.9~12월)와 연계해 안전신문고에 **공장화재 예방** (사업장 안전) **집중 신고기간**을 운영하고, **포상금** 규모 대폭 확대*('27년)

* 예) (現) 건당 20~100만원 포상금 지급 → (改) 건당 20~200만원으로 상향

-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에 따라 부과·환수된 **과징금·벌금** 등의 최대 **30%**를 **포상금**으로 지급(공익신고장려기금 활용)하는 방안 추진



- 일반국민 등의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5억원 포상금 지급

목 차

I . 추진배경	1
II . 추진방향	2
III . 추진과제	3
1. 공장 · 창고 종합 실태조사 실시	3
2. 화재 안전기준 일제 정비	4
3.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	5
4. 안전관리 강화	9
IV . 추진계획	10

I. 추진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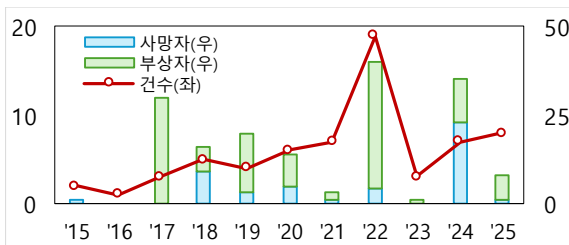
□ 그동안 압축성장 과정에서 **제조현장** 내 **화재 안전**과 관련된 **구조적 문제**가 누적되며 인명피해를 포함한 공장 화재사고 지속

○ 건축·소방 등 각종 **안전기준**이 여전히 주요국 대비 **미흡***하고, 선제적 사고 예방·억제를 위한 **안전관리**도 **부실**

* 대형 공장화재 사고를 계기로 안전기준이 강화('22년 샌드위치패널 준불연 의무화 등) 되어 왔지만, 건축·소방 등 안전기준 전반에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 존재

○ **화재안전** 관련 설비·장비 등에 대한 투자·R&D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관행 등으로 기업의 안전 관련 **투자·R&D** **부진**

공장 관련 대형화재 건수 및 인명피해



* 출처 : '25년 화재통계연감(소방청)

기업 인식 안전보건 핵심 추진전략('23년, %)

구분	응답률
근로자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	61.4
위험성평가 체계 검토 및 활성화	30.4
중대재해법 등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	15.8
인력·조직 및 예산 투자 확대	3.5
스마트 안전보건기술 개발·적용	2.9

* 출처 : '23년 산업안전보건 전망조사(경총)

□ **공장화재** 등 산업재해의 **파급효과**는 개별기업의 **생산·매출손실***에 국한되지 않고, **공급망·고용** 등 **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 초래****

* 산업재해를 1% 증가 시, 매출액 성장률 0.45~0.71% 하락(산업안전보건研, '19년)

** 예) 안전공업 화재에 따른 부품 수급 곤란으로 완성차 업계 생산 차질 발생

○ **산업현장 안전**이 **산업 생산성**과 **경쟁력의 핵심 요소***로 제조 생태계 관점에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필요

* 국가별 산업안전 보건수준과 국가 경쟁력 간 높은 상관관계 시현(ILO, '03년), 재해율이 증가하는 경우 제조기업의 노동생산성 악화(산업안전보건研, '23년) 등

➡ **산업현장의 안전**을 강화하여 노동자가 **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** **공장환경**을 조성하고, **제조 생태계**를 한 단계 **업그레이드**할 필요

Ⅱ. 추진방향

비전

“사람을 살리는” 안전한 공장으로 제조 생태계 혁신

정책
방향

- ① 실태조사에 기반해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
- ②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춰 기업 안전투자 적극 뒷받침
- ③ 선제적 예방·방지에 효과적인 안전 관리체계 마련

4대 과제	주요내용
1 화재안전 실태조사 실시	전국 총 19만동+α 공장·창고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대규모 종합 실태조사(시범조사 + 본조사 ^{3단계}) 실시
2 화재 안전기준 일제 정비	1 (내화규제) 위험물시설 불연 외장재 의무화 등 2 (소방시설)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 등 3 (위험물)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 도입 등
3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	1 (재정) 화재제로 보조·대출 패키지 신설 등 2 (금융) 정책금융 3조원 신속 공급, 보험료 할인 등 3 (세제) 화재예방 설비투자 촉진 세제 3종세트 4 (조달) 공공조달 가점^{우수기업}·패널티^{중대재해} 발생기업 부여
4 안전관리 강화	1 (안전점검) 사후검사제도 도입, 이행강제금 강화 등 2 (신고포상제) 안전신문고 포상금 지급 규모 확대, 과징금·벌금 등의 ^{최대}30%를 신고포상금 지급

Ⅲ. 추진과제

1. 공장·창고 대규모 화재안전 실태조사 실시

◆ 화재 위험 우려가 있는 **총 19만동+α 공장·창고**를 대상으로 화재 취약성 및 위법 현황 전반에 대해 **법정부 실태조사**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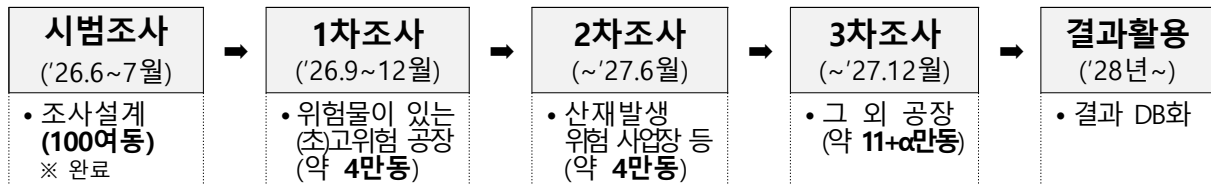
□ (대상) 연면적 **500m² 이상*** 공장·창고 **19만동**(전국 73만동 중 26%) + **위험물보관소, 산재발생 위험 사업장**은 **500m² 미만**이더라도 조사

* 창고 내화구조 등 건축법상 규제가 본격 적용되는 최소 바닥면적(500m²) 고려

○ 위험물이 있는 (초)고위험 공장·창고부터 **3단계 본조사**

(시범조사(6.17~7.22) 결과를 토대로 8월 중 본조사 대상·방식 등 확정)

※ 점검대상 중 국가보안시설(방산기업 등)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진행
+ 석유화학 등 폭발·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은 집중조사 실시



※ 단계별 조사결과는 주기적으로 발표

□ (내용) 건축·소방·안전 등 **화재 취약성 및 위법 현황** 전반*

* 위반건축물 여부, 준불연 샌드위치패널 설치 여부, 난연 성능(난연, 불연 등), 소방시설(스프링클러, 소화전 등), 위험물 여부, 산업안전·전기·화학안전 관련 사항 등

□ (방식) **민간 전문가·청년*** + 기존 인력(소방서, 지방정부 등) 활용

- ▶ (정밀조사반) 위험도가 높은 건물 대상, 전문가 중심 인력 구성
[민간전문가] 건축사, 소방기술사 등 [공무원] 지방정부·소방서·노동청 3명
- ▶ (기본조사반) 일반적인 건물 대상, 청년인력 함께 활용
[청년] 기사급 자격 대졸자·대학생 [공무원] 지방정부·소방서·노동청 중 1명

○ 국토·노동·기후부,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조사단 구성·운영

□ (활용) 확인된 불법증축 등 **위반사항**은 **즉시 개선** 조치하고, **실태조사 결과**는 **데이터베이스화**해 체계적으로 관리

2. 화재 안전기준 일제 정비

◆ 건축·소방·위험물 등 **화재 안전기준**을 **선진국 수준**으로 대폭 강화

- ① (내화규제) 위험물 시설* 대상으로 **불연 외장재** 의무화(~'26.12), 공장 **내화구조** 및 **준불연 외장재** 적용 확대('27년) 검토 국토부

* 주유소, LPG 충전소, 위험물·유독물 저장소, 고압가스 충전·판매소 등

- ▶ 위험물 저장·처리시설 : (現) 준불연 외장재 사용 → (改) 불연 외장재 사용 의무화
- ▶ 공장 내화구조 : (現) 얼음·생수·금속업종(63개) 등 제외 → (改) 모든 업종에 적용
- ▶ 공장 준불연 외장재 : (現) 6층^{22m} 이상만 적용 → (改) 3층^{9m} 이상으로 확대

[참고] 공장 내화구조(건축법 시행령 제2조, 건축법방화구조규칙 제3조)

- ▶ (정의) 화재에 견딜 수 있는(耐火) 성능을 가진 구조
- ▶ (예시) 철근(철골)콘크리트면서 두께가 10cm 이상인 벽, 철근(철골)콘크리트면서 작은 지름이 25cm 이상인 기둥 등



- ② (소방시설) 오작동이 적은 **지능형 화재감지기** 설치 의무화(~'26.12),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확대(~'26.12) 소방청

- ▶ 지능형 화재감지기 : (現) 일반감지기(열·연기 감지시 경보 작동, 오작동 多) 설치 의무화 → (改) 지능형 화재감지기(사용 패턴을 파악해 실제 화재발생 여부 판단) 설치 의무화
- ▶ 스프링클러 : (現) 4층 이상이면서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,000㎡ 이상인 층 → (改) 연면적 5,000㎡ 이상인 공장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

[참고] 지능형 화재감지기

- ▶ (정의) 연기 또는 온도 변화 외에도 설치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 실제 화재 여부를 정밀하게 판단하는 화재감지기
- ▶ (특징) 설치된 환경에 따라 화재를 감지하는 온도 또는 연기 센서를 조정할 수 있어 기존 감지기 대비 오작동을 저감



- ③ (위험물 등) 금속분진·가공유 취급작업에 대한 관리 의무 부여 검토('26.12) 노동부,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 도입(~'28년) 소방청

- ▶ 위험물 등 취급작업 : 금속분진·가공유 취급작업에 대한 관리 의무 부여 검토
- ▶ 위험물시설 점검 : 기술역량·장비, 전문성을 갖춘 점검업자가 위험물 점검 수행

3.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

◆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춰 **안전투자**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·금융·세제 등 **인센티브**를 **획기적**으로 **강화**

(1) [재정] 안전투자 촉진 화재제로 보조·대출 패키지 신설 등

① (안전투자) 중소·중견기업 대상 안전투자 촉진 **재정지원**(보조) 사업과 **대출 프로그램**을 **신설**해 화재예방 등 안전투자 지원

❶ 화재·폭발 취약 사업장에 ①화재·폭발 예방장비·품목 구매*, ②소방시설 설치·교체**를 지원하는 **보조사업**(27~31년 0.2조원) **신설** 노동부

* AI 화재감지기,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, 스마트 피난유도설비, 소화기 등

** 스프링클러 설치, 비상구 설치·개선, 노후 분전함 교체 전기공사, 바닥공사, 난연성 재질 벽체(패널) 교체 또는 내화시공 등

■ 기존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지원사업* 대비, **화재·폭발에 특화**해 **지원대상**(300인 미만^{상시근로자} 수 사업장)·**한도**(최대 1억원) 대폭 **상향**

* 예) 안전일터 조성(고위험 개선) : (대상)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(한도)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당 최대 3,000만원

《 보조사업 지원대상 품목(예시) 》

AI 화재감지기	▶ 화재·폭발 위험장소에 설치해 AI 기반으로 불꽃 등을 초기에 인지·반응(15초 이내)하는 화재감지기 ▶ 노동자 등이 없어도 불꽃 등 인지시 자동 경보	
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	▶ 사물인터넷(IoT), 정보통신기술(ICT) 등을 활용하여 전력사용에 대한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 ▶ 전력 이상(과부하, 누전, 과전압 등) 발생 시, 알림 및 조치하여 전기 관련 화재 등을 조기 예방	
스마트 피난유도 설비	▶ 화재폭발 위험장소에 정보통신, 센서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, 화재 발생 시 비상구로 작업자 피난 유도 ▶ AI 기반 분석으로 화재 발생 지점, 출입구 개방 여부 등을 종합해 최적화된 대피 경로 제시	
스프링클러	▶ 화재 발생시 열연기 등을 감지해 자동으로 물을 분사해 화재 발생 초기에 피해 확산 방지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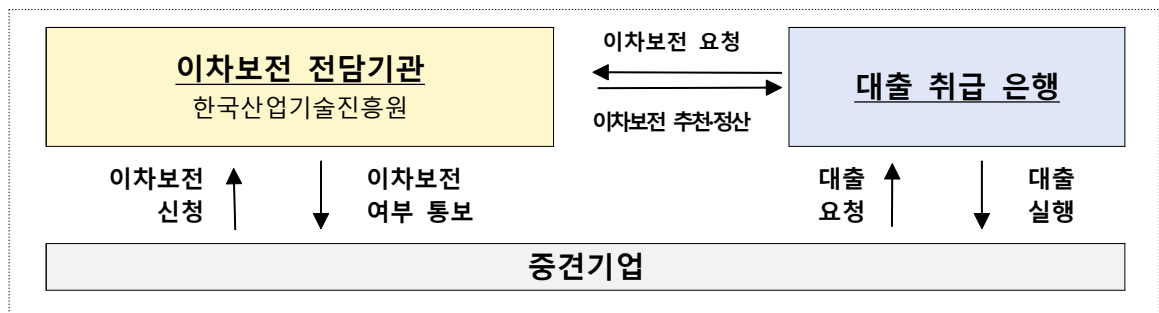
② 중소·중견기업 화재 안전투자 지원을 위해 5년간('27~'31년) 총 1.25조원 규모 가칭 **화재제로 안전투자 대출 프로그램** 신설

(i) [중소] 화재안전 설비 개선·확충이 필요한 중소기업 안전투자 지원을 위한 **융자 프로그램***('27~'31년, 2,500억원) 신설 [중기부]

* 장기 저리, 최대 대출한도 상향, 지원횟수 제한(5년간 3회) 미적용 등 우대

(ii) [중견]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에 **이차보전**(2.0%p, 기업별 대출 최대 20억원) **지원 사업***('27~'31년, 1조원 대출 지원) 신설 [산업부]

* 건물 노후화(전기·배관 등) 및 소방시설 개보수(예: 스프링클러, 난연성능 개선) 등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·설비 개보수 등 지원



② (방재·예방) 원청이 상생협력기금 등을 통해 **협력업체의 화재 예방설비** 등 지원 시 정부매칭 비율(40%)·한도(8천만원) 상향* [노동부]

* (現) 안전동행 지원사업(원·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)의 경우 총 소요비용의 40%(8천만원 한도)를 정부가 지원(원청 또는 상생협력기금 최소 10%, 중소기업 자부담 약 50%)
(改) '26년 말까지 정부매칭 비율한도 한시 상향(50% 1억원 한도) → 중소기업 자부담 △10%p

○ 단독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**산단 내 통합관제센터**('26년 現 21개) **구축 확대** [산업부]

○ **안전관리체계 컨설팅 확대*** 등 중소기업 산재예방 지원 강화 [금융위]

* 예) 기은, 중소기업 화재예방 등 산업안전 리스크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지원 등

③ (안전장비) 고위험 사업장* 중심으로 초기 화재 억제에 효과적인 **자동확산소화기** 단계적 보급 사업 추진('27~'31년, 약 2만개소) [소방청]

* ①기계기구 및 금속·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, ②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

[참고] 자동확산소화기

- ▶ (정의) 화재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고정 설치해 사람이 없이도 화재를 감지하고 소화약제를 자동 분사하는 기기
- ▶ (특징) 스프링클러 대비 설치가 간단(배관공사 등 불필요)하고 설치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



- 노동부와 협업해 화재감지, 스마트 안전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산업안전 분야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* 중기부

* ('26년) 65억원, 34개사 → ('27년 안) 80억원, 40개사

- 4] (R&D) AI 기반 위험 조기경보, IoT 기반 화재 통합관제 등 화재예방 R&D* 지원(4개 과제, '25~'27년간 총 26.4억원) 중기부

* 예) AI 기반 위험 예측 알고리즘 및 경보 시스템 구축, 온도·압력 기반 화재·폭발 감지 센서 개발,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 대시보드 및 관제 플랫폼 구축 등

- 건축물 화재 확산 방지 및 피난·소화성능 향상 기술개발('25~'29년, 45억원) 등 화재취약 대상별 맞춤형 R&D 추진 소방청

[2] [금융] 안전투자 정책금융 3조원 신속 공급, 보험료 할인 등

- 1] (정책금융) 사업장 안전관리 및 산재 예방활동 지원 등을 위해 총 3조원 규모 정책금융 신속 공급 금융위

- 中企 화재예방 설비투자 대상 정책금융(산은) 금리 추가우대(△20bp) 금융위

* (현행) △80bp → (우대) △80bp + △20bp = 총 △100bp

- 中企 안전투자에 대한 정책자금을 우대하고, 안전 인프라 투자보증*(기보, '26년 0.2조원) 지원 대상에 화재취약기업 추가 중기부

* 보증비율 상향(85 → 90%), 보증료율 0.2%p 감면 등 우대지원

- ▶ 산은(1.5조원) : 안전산업 분야 영위 기업*이 안전설비투자시 금리 우대(0.5조원, △80bp),
* 표준산업분류상 재난안전산업 업종에 해당 혹은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품 생산 등
산업안전 우수기업(지방정부 선정) 등에 대한 금리 우대(1.0조원, △50bp)
- ▶ 기은(1.0조원) : 안전분야 신규투자 및 환경 개선 우수기업 금리 우대(최대 △150bp)
- ▶ 신보(0.5조원) : 산업안전 우수기업 등 우대보증(보증비율 95%, 보증료율 △0.3%p)

② (보험) 화재 안전장치 구비 공장 등에 대해 **화재보험 할인** 제공 금융위

- 보험계약체결 이후에도 소화설비 할인금액 환급 추진* 금융위 +
재해경감 우수기업**이 화재보험 등 재난보험 가입시 할인 추진 행안부

* (現) 보험 계약 체결 前 소화장비를 구비한 경우에만 할인 적용 →
(改) 계약체결 이후 소화장비를 구비하더라도 무사고로 계약 종료시 환급 실시

** 적정한 재해경감 계획을 수립·이행한 기업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

- ▶ 소화설비 : 소화설비할인검사에 합격한 소화설비가 있는 경우 **할인율** 적용
↳ 할인율(%) : (소화기)3~15 (화재탐지장치)5~10 (화재속보장치)5 (스프링클러)15~60 (이산화탄소설비)10~20
- ▶ 특수건물 : 특수건물(3천㎡ 이상 공장) 대상 **안전 등급별 할인율** 차등 적용(고등급 고할인율)
- ▶ 우량물건 : 보험가입금액 20억원 이상이면서, 과거 5년 평균 손해율이 68% 미만인
공장에 대해 현장조사 후 **할인율**(2~25%) 적용

[3] (세제) 기업 화재예방 설비투자 촉진 세제 3종세트 추진

- ① (세액공제) AI, 로봇 등을 활용한 **첨단 안전기술** 등을 **신성장·원천기술**로 지정하여 관련 시설투자 등 세제지원 확대 재경부

* 투자세액공제율(%) [일반] (대기업)1 (중견기업)5 (중소기업)10
[신성장·원천기술] 3 6 12

- ② (가속상각) 중소기업의 **안전설비 투자**에 대해 **가속상각**(기준 내용연수 50% 단축) 도입 재경부

- ③ (상생협력)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협력업체의 화재예방 설비개선 투자지원 시 **법인세 10% 공제** 재경·중기부

[4] (조달) 공공조달 가점·패널티를 통한 기업의 안전투자 유도

- 화재예방 등 안전투자 우수기업* 등을 대상으로 공공입찰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고, 중대재해 발생기업에는 패널티** 부여 재경부·조달청

* 안전보건경영시스템(ISO-45001, KOSHA-MS) 인증기업, 재해경감 우수기업(추가 검토) 등

** 물품·용역 적격심사 및 우수제품 지정심사 시, 감점 및 지정 연장 배제(26.3월~)

4. 안전관리 강화

◆ 단속·처벌 등 안전점검 강화,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활성화

① (안전점검) 사후검사제도 도입, 실태조사 의무화 등 단속·조사 강화, 이행강제금 강화 및 처벌대상 확대('26.下), 점검·관리체계 개선

- 사후검사제도 도입^{지방정부} : 사용승인 이후 일정기간 경과 시, 허가권자가 위반여부 재확인
- 실태조사 의무화^{지방정부} : (現) 재량규정 → (改) 연 1회 이상 의무화 + 수시조사
- 이행강제금 강화^{지방정부} : (現) 재량에 따라 반복부과 + 가중부과 하한 無(이행강제금의 최대 100% 이내) → (改) 반복부과 의무화 + 가중부과 하한 설정(50~100% 이내)
- 벌칙^{중앙정부} : (現) 불법건축물 건축주 등 처벌 → (改) 설계·시공한 자까지 처벌^{未등록업체포함}
- 소방훈련^{중앙정부} : (現) 서류로만 훈련결과 기록·보관 → (改) 동영상도 추가
- 점검·관리체계^{중앙정부} : 피난·방화시설 관련 공동부령 운용, 화재·폭발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유·누출 가능성 있는 시설 대상 위험물질 반출체계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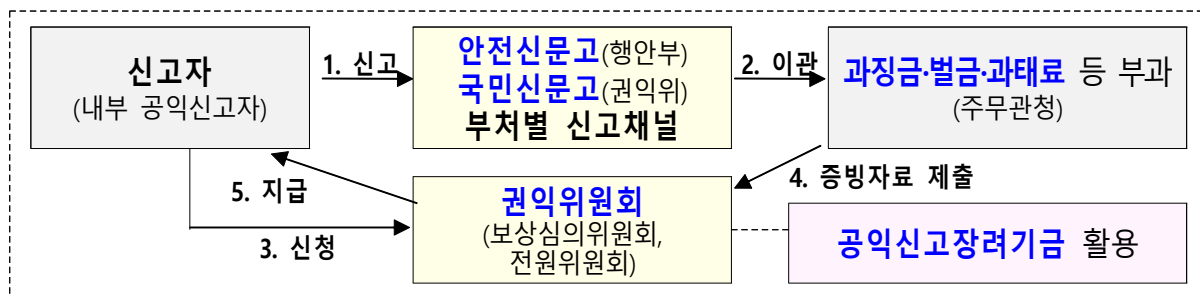
② (신고포상제) 공장화재 관련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해 사각지대 감시 강화 및 위반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제·예방기능 강화

○ 1차 본조사('26.9~12월)와 연계해 안전신문고에 공장화재 예방 (사업장 안전)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, 포상금 규모 대폭 확대*('27년)

* 예) (現) 건당 20~100만원 포상금 지급 → (改) 건당 20~200만원으로 상향

○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강화해 위법행위 사전 억제·예방

■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에 따라 부과·환수된 과징금·벌금 등의 최대 30%를 포상금으로 지급(공익신고장려기금 활용)하는 방안 추진



■ 일반국민 등의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5억원 포상금 지급

IV. 추진계획

정책 과제	추진시기	부처·기관
-------	------	-------

1. 공장·창고 화재안전 대규모 실태조사 실시

▶ 총 3단계 실태조사 실시	~'27.12	국토부 등
-----------------	---------	-------

2. 화재 안전기준 일제 정비

▶ 위험물 시설 대상 불연 외장재 의무화 (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)	~'26.12	국토부
▶ 공장 내화구조 적용 확대 검토 (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)	~'27년	국토부
▶ 공장 준불연 외장재 적용 확대 검토 (「건축물방화구조규칙」 개정)	~'27년	국토부
▶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 (「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」 개정)	~'26.12	소방청
▶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확대 (「소방시설법 시행령」 개정)	~'26.12	소방청
▶ 금속분진·가공유 취급작업 관리 의무 부여 검토 (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개정)	~'26.12	노동부
▶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 도입 (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개정)	~'28년	소방청

3.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

▶ 화재·폭발 취약 사업장 보조사업 신설	'27년	노동부
▶ ^{가칭} 화재제로·안전투자 대출 프로그램 신설	'27년	중기·산업부
▶ 안전동행 지원사업(원·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) 정부 매칭비율·한도 상향	~'26.12	노동부

▶ 자동확산소화기 단계적 보급 사업 추진	'27년	소방청
▶ 산업안전 분야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	'27년	중기부
▶ AI 기반 위험 조기경보 등 화재예방 R&D 지원	~'27년	중기부
▶ 안전 인프라 투자보증에 화재취약기업 추가	'27년	중기부
▶ 보험계약체결 이후 소화설비 할인금액 환급	'27년	금융위
▶ 재해경감 우수기업 재난보험 할인	~'26.12	행안부
▶ 첨단 안전기술 신성장·원천기술 지정	'26.下	재경부
▶ 중소기업 안전설비 투자 가속상각 도입 ('27년 세법개정안 반영)	'26.7	재경부
▶ 안전투자 우수기업 공공입찰 신인도 가점 부여	'26.3~	재경부·조달청

4. 안전관리 강화

▶ 사후검사제도 도입(「건축법」 개정)	~'26.12	국토부
▶ 지자체 실태조사 연 1회 이상 의무화(「건축법」 개정)	~'26.12	국토부
▶ 이행강제금 강화(「건축법」 개정)	~'26.12	국토부
▶ 불법건축물 처벌대상 확대(「건축법」 개정)	~'26.12	국토부
▶ 소방훈련 훈련결과 보관방식 확대 (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)	~'26.12	소방청
▶ 피난·방화시설 공동부령 운영 (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개정)	'27년	국토부, 소방청
▶ 화재·폭발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유·누출 가능성 있는 시설 대상 위험물질 반출체계 구축 (「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규정」 개정)	~'26.12	기후부
▶ 공장화재 예방(사업장 안전) 집중신고기간 운영	'26.9~12	행안부
▶ 안전신문고 포상금 지급 규모 대폭 확대	'27년	행안부
▶ 과징금·벌금 등의 최대 30%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	'27년~	권익위

참 고

공장·창고 실태조사 대상(안) 및 추진체계

① 실태조사 대상(안) ※ 시범조사 결과를 토대로 8월 중 조사대상 확정

- 1단계 본조사*는 위험물 있는 (초)고위험 공장·창고 약 4만동 실시
- 2단계*는 산재발생 위험 사업장 등 4만동, 3단계는 그 외 11만동+a 실시

* 시범조사 결과를 반영해 본조사 대상·내용·방식 등 세부내용을 8월 중 확정

소관	항목	대상(동)	1단계	2단계	3단계
국토부	공장 5백㎡ 이상	16.7만			
	창고 5백㎡ 이상	2.4만			
소방청	위험물	4.6만			
	화재이력	9천			
노동부	산재발생 위험	6.5만			
	산재발생 초고위험	6.4만			
기후부	유해화학물질	1.2만			
합계		19만 +a	4만	4만	11만+a

※ (위험물) 공장과 관련없는 시설은 제외, 연관된 제조소·일반취급소·옥내저장소만 추정
(산재발생 초고위험)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선정 산재발생 위험 사업장에 모두 해당되는 사업장
(유해화학물질) 화재 위험 특성(인화성)이 있는 물질(58종)을 취급하는 사업장

② 추진체계

- 국토부 주관, 관계부처^{노동·기후·소방}·지방정부 협조체계로 추진

* 운영 총괄은 국토부에서 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하여 수행

- 조사인력은 교육거처 배치, 단계별로 점검반 구분하여 실시

